예 산 총 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463,085,276	13,892,558
일반회계		460,000,000	13,800,000
특별회계		3,085,276	92,558
	기타특별회계	3,085,276	92,558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77,380	23,321
	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31,500	945
	주차장사업특별회계	2,276,396	68,292

- 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178,427천원으로 한다. (일반예비비 2,000,000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,178,427천원)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